여비지급규정

제 정 2005. 04. 06 개 정 2006. 03. 27 개 정 2008. 04. 08 정 2011. 12. 30 개 정 2012, 12, 21 개 정 2015. 03. 30 개 개 정 2015. 10. 12 정 2016. 04. 06 개 개 정 2018. 05. 25

제1장 총 칙

- 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전북연구원(이하 "연구원"이라 한다) 임원 및 직원(이하 "임·직원"이라 한다)이 원무로 여행할 때의 여비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(개정 2015.10.12)
- **제2조(정의)** 이 규정에서 여비라 함은 운임, 일비, 숙박비, 식비 및 준비금을 말한다.(개정 2018.5.25)
- 제3조(계산) 여비는 일반적인 경로 및 방법에 의하여 이를 계산한다. 다만, 공무형편상 또는 천재지변,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일반적인 경로 및 방법에 의한 여행을 하기 곤란할 때에는 원장이 인정할 때에 한하여 실제로 여행한 경로 및 방법에 의하여 계산할 수 있다.(개정 2018.5.25)
- 제4조(신분 등 변경) 출장 중 신분이 변경되어 여비계산을 구분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발령일을 기준하여 계산한다.
- 제5조(임원 및 상위직급 수행) ①직원이 임원을 수행 출장할 때의 교통비는 그임원과 동액, 교통비 이외의 여비는 그 임원의 8할을 지급하되, 통상여비가고 보다 많을 때에는 많은 쪽을 기준 한다.

②국내출장 시 직원이 동일 업무로 상위직을 수행 출장하여야 할 경우에는 교통비는 그 상위직과 동액을 지급할 수 있다.

- 제6조(전도지출) 여비는 출장 전에 전액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불가피한 경우 개산급으로 지급할 수 있으나, 이때에는 귀임 후 5일 이내에 정산하여야 한다.
- 제7조(복명) 출장자는 귀임 후 원장에게 복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 다만, 직무수 행상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여정이 단축 또는 연장되었을 경우에는 귀임 후 원장에게 단축 또는 연장사유를 복명하고 여비를 정산하여야 한다. 전주 시내 출장일 경우에는 복명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.
- 제8조(지급의 특례) 특별한 임무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여비의 정액을 달리 하여야 할 경우에는 원장의 승인을 받아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
- 제9조(자문위원 및 정원외 직원)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구자문위원, 정원외 직원 및 원외 인사도 본 연구원 임무를 위탁받아 여행할 수 있으며,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직원의 직급에 대등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제2장 국내출장여비

- 제10조(지급기준) ①국내여비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〈별표1〉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급한다. 다만, 직무수행상 본 연구원 차량 또는 자가운전차량 등을 이용하는 편이 업무수행에 유리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운임을 지급하지 않고, 차량운행거리에 해당하는 유류비, 통행료를 지급할 수 있다.(단, 연구원 차량 이용시 일비의 2분의 1을 감하여 지급한다.)(개정 2008.4.8.)(개정 2015.3.30)
 - ②벤치마킹, 워크샵 등 다수의 인원이 동일목적으로 출장하거나 현장조사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출장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차량을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다. 이 경우, 일비의 2분의 1을 감하여 지급한다.(신설 2015.3.30)

제11조(운임의 구분) 운임은 항공운임, 철도운임, 선박운임, 자동차운임으로 구분하되. 〈별표1〉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한다.(개정 2015.3.30)

- 제12조(항공여행) 원장은 시급을 요하는 용무이거나 항공편이 유리하다고 인정할 때에 한하여 항공임을 지급할 수 있다.
- 제13조(실비운임) 정액의 운임으로 실비지급이 곤란한 특별한 경우에는 실제 소요액을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이때에는 실비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 여야 한다.
- **제14조(숙박기준)** 공무사정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1일 행정 여행에 있어서 는 지역별 숙박을 인정하지 아니한다.
- 제15조(장기체재 시의 일비, 숙박비) 동일 지역에 15일 초과 체재 시에는 그 초과 일수에 대한 일비 및 숙박비를 정액의 2할을 감액 지급한다. 다만, 파견근무에 준하는 출장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.
- 제16조(근거리 여행) 당일 용무를 끝마친 후 귀가할 수 있는 근거리 출장에는 숙박비를 인정하지 아니하며, 교통비와 일비 등을 실비로 계산하여 지급한 다. 단, 시내출장의 경우 교통비만을 지급한다.

제3장 국외출장여비

- **제17조(지급기준)** ①국외여비는 〈별표2〉에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한다. (개정 2008.4.8)
 - ②초청자 일부 부담으로 외국에 출장하는 때에는 〈별표2〉의 기준에 의한 차액을 연구원에서 지급할 수 있다.
 - ③국외출장시 공무형편상 또는 기타부득이한 사유로 여비지급규정 제17조 (지급기준)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초과금액이 발생할 경우〈별지서식 1〉에 따라 숙박비 및 식비 상한액의 2분의 1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추가로 지급 할 수 있다. 공무형편상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는 다음과

같다. (신설 2008.4.8)

1. 숙박예정시설로 지정된 숙박시설의 객실요금 및 식비가 해당 여비액보다 비싼 경우 (신설 2008.4.8)

- 2. 지급 받은 숙박비의 범위내에서 해당지역에 숙박 가능한 숙박시설이 없거나, 숙박시설이 있어도 출장목적지와 거리가 멀어 출장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(신설 2008.4.8)
- 3. 직원이 동일 업무로 상위직을 수행 출장하여야 할 경우 출장목적 수행상 함께 숙식을 하여할 필요가 있으나 하급자의 여비액이 부족하여 함께 숙식할 수 없는 경우(단, 상급자와 동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등급으로 상향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음.) (신설 2008.4.8)
- 4. 여비액에 상응한 숙박시설 이용시 신변의 안전에 위험이 초래될 우려가 높은 경우 (신설 2008.4.8)
- 5. 수로여행과 항공여행중 생리적 사유로 도착 전후 또는 경유지에서 따로 식사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) (신설 2008.4.8)
- 제18조(준비금) ①준비금은 국외출장시 사전준비를 위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여비로서 비자발급비, 예방접종비, 여행자보험가입비, 풍토병예방약 구입비를 말하며, 동 경비에는 비자발급 대행수수료 등 준비금 지급대상의 목적물을 실현하기 위하여 수반되는 부대경비를 포함한다. (개정 2015.3.30.)
 - ②출국전 또는 출장을 마친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2주일이내에 준비금 세부사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할 경우 실비로 지급한다. (신설 2015.3.30)
- 제19조(체재비) 체재비는 여행일수에 따라 이를 지급한다. 다만, 동일지에 장기 간 체재하는 경우의 체재비는 그 곳에 도착한 날부터 기산하여 그 일수가 30일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 일수에 대하여 정액의 1할, 60일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 일수에 대한 정액의 3할에 상당한 액을 감급한다.
- 제20조(장기 체재자에 대한 체재비 지급) 60일을 초과하는 장기 체재자에 대한 체재비는 2개월에 1회씩 소요액을 송금에 의하여 지급한다. 다만, 전액을 지급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원장의 승인을 얻어 이를 지급할 수 있

다.

제21조(부대비) (삭제 2015.3.30)

- 1. (삭제 2015.3.30)
- 2. (삭제 2015.3.30)
- 3. (삭제 2015.3.30)
- 4. (삭제 2015.3.30)
- 5. (삭제 2015.3.30)
- 6. (삭제 2015.3.30)

제4장 보 칙

- 제22조(준용규정) 본 규정은 매 연도 정부출연기관 예산편성 및 관리지침을 참고하여 변동률을 연동으로 적용하며, 예산 범위 내에서 집행하여야 한다.
- 제23조(휴직 및 퇴직자의 여비) ①휴직 또는 퇴직한 자에게 잔무 처리상 출장 케 하였을 때에는 전직 당시의 신분에 의하여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
 ②공무여행 중에 휴직 또는 퇴직된 자의 여비는 그 통지를 받은 곳부터 구임지까지 전직 신분에 의하여 지급한다. 다만, 형사사건으로 기소되거나 징계처분에 의한 자는 전항의 출장비를 지급치 아니할 수 있다. 징계대상에서 기각되거나 법원의 무죄선고가 되면 여비는 소급하여 지급한다.
- 제24조(신규 채용자) 신규로 채용되어 부임하는 자에 대하여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 한하여 부임에 소요되는 여비(실비)를 지급할 수 있다.
- 제25조(출장 중 사고) 여행 중 질병 또는 불의의 사고로 부득이 체재하였을 때에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기타 확실한 증거가 있을 때에 한하여 일비 및 숙박비를 추가 지급한다. 이 경우에는 원장에게 지체없이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.
- 제26조(여행 중 사망자의 여비) 출장 중 사망하였을 때에는 출장지로부터 구임 지까지 전직에 상당한 여비의 배액을 그 유족에게 지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.

부 **칙** (2006.03.27)

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.

부 **칙** (2008.04.08)

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.

부 **칙** (2011.12.30)

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.

부 **칙** (2012.12.21)

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(2015.3.30)

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.

부 **칙** (2015.10.12)

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(2016.04.06)

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(2018.05.25)

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.

〈별표1〉(개정 2006.3.27)(개정 2008.4.8)(개정 2011.12.30.)(개정 2012.12.21) (개정 2015.3.30)(개정 2016.4.6)

국내출장여비

(단위 : 원)

구 분		순	이		را دا	الراسة	a) ai
직 급	항 공	철 도	선 박	자동차 (버스)	일 비	숙박비	식 비
임 원	실 비	실 비 (특실)	실 비 (1등급)	정 액	20,000	실 비	25,000
여성정책연구소장 선임연구위원	실 비	실 비 (특실)	실 비 (1등급)	n	20,000	80,000	23,000
연구위원 이하 2급 이하 가급 이하 등 직원	실 비	실 비 (일반실)	실 비 (2등급)	n	20,000	서울특별시 : 70,000 광 역 시 : 60,000 그밖의 지역 : 50,000	20,000

주 : (삭제 2012.12.21)

비고 : 1. 자동차(버스)운임은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특별시장·광역시장·도 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기준 및 요율의 범위안에서 정하여진 버스요금을 기준으로 한다.

〈별표2〉(개정 2008.4.8)(개정 2011.12.30.)(개정 2012.12.21) (개정 2015.3.30)(개정 2018.5.25)

국외여비정액표

(단위: \$)

구 분	등급	체재비 내역			- 준비금	항공임	
직 명	o H	일비	숙박비	식비	- 단미ㅁ	ਰਿਲੇ	
임 원	가 나 다 라	「공무원 여비규정」 공무원 국외여비 지급표 4. 별표 1의 제1호라목 기준			실 비		
여성정책연구소장 선임연구위원	가 나 다 라	「공무원 여비규정」 공무원 국외여비 지급표 5. 별표 1의 제2호가목 기준			실 비	공무원 국외 항공운임 정액표 기준	
연구위원 이하 2급이하 가급이하 등 직원	가 나 다 라	「공무원 여비규정」 공무원 국외여비 지급표 6. 별표 1의 제2호나목 기준			실 비		

주 : 1. 국가 및 도시별 등급구분 : 「공무원 여비규정」 중 국외여비 지급표 의 국가 및 도시등급 구분 적용

주 : 2.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라 일비, 숙박비, 식비를 지급하되, 숙박비의 경우 상한액의 85%로 숙박비를 지급한 경우에는 숙박비 지출내역을 정산하지 아니한다.

<별지서식1> (신설 2008.4.8)

여비정산 신청서

			직 급 (직위)		성 명	
일 시	년	월	일 ~	년	월 일	
출장지						
지급받은 금액		실제 소요액		초과지출 사 유		
지급받은 금액		실제 소요액		초과지출 사 유		
	출장지 지급받은 금액	출장지 지급받은 금액	출장지 지급받은 금액 실제 소요액	일 시 년 월 일 ~ 출장지 실제 소요액	일 시 년 월 일 ~ 년 유 출장지 지급받은 금액 실제 초과지출 사 유	일 시 년 월 일 ~ 년 월 일 출장지 지급받은 금액 실제 초과지출 사 유 지급받은 그애 실제 초과지출

「여비규정」제17조 3항에 의하여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위와 같이 여비의 정산을 신청합니다.

첨 부

1. 숙박비, 식비 : 영수증

년 월 일

신청인 성명

(서명 또는 인)